

[자료집]

# 농촌 복지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일 시 : 2011년 8월 31일(수) 1시5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131호

주최 : 국 회 의 원 조 진 래  
주관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수축산연합회  
후원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림수산방송

[자료집]

# 농촌 복지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일 시 : 2011년 8월 31일(수) 1시5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131호

주최 : 국 회 의 원 조 진 래  
주관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수축산연합회  
후원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림수산방송

.....  
대 회 사  
.....

국회의원 조진래  
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함천



안녕하십니까? 경남 의령·함안·함천 국회의원 조진래 의원입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복지’라는 말이 큰 화두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한창인 ‘복지논쟁’에서 농촌복지문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촌현실을 반영한 농촌복지의 실태를 점검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농촌복지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정책세미나를 함께 주관하여 주신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님과 임원, 농수축산연합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한국농촌은 태풍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 세계 여러 국가와의 FTA체결 등의 외부적인 요인과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소득불안정 등의 내부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그 어려움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지역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다문화가족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귀농·귀촌인구의 급증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12)’에 따르면 농업인 중 사회보장제도에 전적으로 기대거나(6.6%), 아무런준비도 없다(12.0%)는 취약계층도 18.6%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의 노후대책 준비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도시민과 농업인의 삶의질 만족도 격차(‘06년7.5%→’10년 14.3%)는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농촌지역 복지 및 교육 등의 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등 농촌의 인구 유지 및 유입에 필수적 요소인 농촌주민의 복지가 시급한 해결 과제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촌복지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심도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금번과 같은 행사야말로, 참으로 뜻있고 의미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간(2005년 이후 2010년까지) 정부에서는 농어촌 복지, 의료, 교육, 기초인프라, 문화 등 분야에 총 28조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3조원을 지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원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과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민들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려면 농촌의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주요한 방법입니다.

지난해 제가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근거로 정부에서도 농어촌지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폭넓은 논의가 진행·반영된바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농촌복지관련 법안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와 각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농촌복지정책의 올바른 점검과 진단은 물론 향후 선도적 농촌복지 정책과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선도적 농촌복지 정책이야말로 농어업의 발전과 농촌사회의 안정을 이끄는 큰 견인차 역할을 해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정책세미나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 우리 농촌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회장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수축산연합회 상임대표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 좀 더 나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촌 복지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400만 농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항상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을 아끼시지 않으며,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세미나를 성사시키는 데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경남·의령·함안 합천 지역구인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농촌은 생산비 상승과 계속된 이상기온,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점점 농업을 포기하는 이들과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경제력의 약화로 활동이 저하되어,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에서 아기우는 소리가 사라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왜 발생하는 것인지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08년도 통계청의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생활환경 쾌적성 및 이웃과의 만족도 등은 높은 반면에 복지수준, 교육여건 및 기초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질병 발생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자녀의 교육여건 또한 도시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통계를 통하여 정부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농촌 생활 여건 속에서도 대책없는 다국간 FTA 비준, 농산물가격 인하 등 농업인 압박 정책으로 일관하여, 기본적인 복지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 이중고를 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 농촌 복지 정책의 현실성 있는 진단과 함께 농촌복지와 관련된 정책적 변화방향을 재설정하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토론자 한분 한분의 고견을 가감 없이 나눠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복지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 표 자 료

# 농어촌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2011. 8. 3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1. 농어촌 복지 정책의 접근 관점

- 복지 정책은 불평등의 완화와 빈곤의 감소를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하여 격차와 불평등의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의 역할이 요구됨
- 복지 정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지난 6월 OECD의 사회정책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점차 악화되는 사회적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하였음
- 특히 대도시에 비해 절대적·상대적인 불평등을 해소함과 아울러 농어촌 여건에 부합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농어촌 복지 정책이 설계·추진되어야 함
- 농어촌 복지 서비스 지원이 농어업인 입장에서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농어촌 복지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농어촌의 현실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 과제 및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



## II. 농어촌 복지 정책 여건의 검토<sup>1)</sup>

### 1. 농가 및 농가 인구

- 2009년 12월 1일 현재 농가수는 119만 5천가구(7.1%), 농가인구는 311만 7천명(6.4%)으로 2008년 대비 각각 1.4%, 2.2% 감소

- 고령화에 따른 농업포기, 전업 등으로 농가수는 2008년에 비해 1만 7천가구, 농가인구는 6만9천명 감소
  - 총가구 대비 농가비중은 7.1%로 2008년에 비해 0.2%p 감소
- 남자는 1,510천명, 여자는 1,607천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9만7천명 많으며, 2008년 대비 남자 2.1%, 여자 2.3% 각각 감소

####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천가구, 천명, %, %p)

|           | 2006  | 2007  | 2008  | 2009  | 전년 대비  |      |
|-----------|-------|-------|-------|-------|--------|------|
|           |       |       |       |       | 증 감    | 증감률  |
| 농 가 수     | 1,245 | 1,231 | 1,212 | 1,195 | -17    | -1.4 |
| 총가구 대비(%) | 7.7   | 7.5   | 7.3   | 7.1   | -0.2%p |      |
| 농가 인구     | 3,304 | 3,274 | 3,187 | 3,117 | -69    | -2.2 |
| 남 자       | 1,607 | 1,590 | 1,542 | 1,510 | -32    | -2.1 |
| 여 자       | 1,697 | 1,684 | 1,644 | 1,607 | -37    | -2.3 |
| 총인구 대비(%) | 6.8   | 6.8   | 6.6   | 6.4   | -0.2%p |      |

### 2. 농가구조

- 농가 경영주의 32.6%(38만 9천가구)는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18.4%(21만 9천가구)는 여성임

- 농가 경영주의 32.6%(38만 9천가구)는 70세 이상 고령자, 18.4%(21만 9천가구)는 여성
  - 70세 이상 경영주 농가는 2008년에 비해 5.3% 증가(비중은

1) 이 글은 농어촌 복지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주제발표를 맡은 본 연합회의 특성상 부득이 농업 분야 관련 통계에 한정하여 복지 여건을 분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p 증가)

<경영주 연령대별 농가>

(단위 : 천가구, %)

|      | 합 계              | 40세미만       | 40~49         | 50~59         | 60~69         | 70세이상         |
|------|------------------|-------------|---------------|---------------|---------------|---------------|
| 2008 | 1,212<br>(100.0) | 24<br>(2.0) | 138<br>(11.4) | 283<br>(23.3) | 397<br>(32.8) | 370<br>(30.5) |
| 여자   | 217<br>(17.9)    | 2<br>(0.2)  | 9<br>(0.7)    | 33<br>(2.7)   | 76<br>(6.3)   | 97<br>(8.0)   |
| 2009 | 1,195<br>(100.0) | 21<br>(1.7) | 122<br>(10.2) | 276<br>(23.1) | 387<br>(32.4) | 389<br>(32.6) |
| 여자   | 219<br>(18.4)    | 1<br>(0.1)  | 8<br>(0.7)    | 32<br>(2.7)   | 73<br>(6.1)   | 105<br>(8.8)  |
| 증 감  | -17.3            | -3.5        | -16.4         | -7.3          | -9.6          | 19.6          |
| 증감률  | -1.4             | -14.6       | -11.9         | -2.6          | -2.4          | 5.3           |

3. 성별 및 연령대별 인구구조

-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년에 비해 0.9%p 증가

-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0.7%에 비해 23.5%p 높게 나타남

<농가인구 고령화율>

(단위 : 천명, %, %p)

|             | 2006  | 2007  | 2008  | 2009  | 전년대비  |      |
|-------------|-------|-------|-------|-------|-------|------|
|             |       |       |       |       | 증 감   | 증감률  |
| 농가인구        | 3,304 | 3,274 | 3,187 | 3,117 | -69.4 | -2.2 |
| 65세 이상 농가인구 | 1,018 | 1,052 | 1,060 | 1,067 | 7.2   | 0.7  |
| 농가 고령화율*    | 30.8  | 32.1  | 33.3  | 34.2  | 0.9%p |      |
| 남 자         | 29.0  | 30.1  | 31.2  | 32.2  | 1.0%p |      |
| 여 자         | 32.5  | 34.0  | 35.2  | 36.2  | 1.0%p |      |
| 전체 고령화율     | 9.5   | 9.9   | 10.3  | 10.7  | 0.4%p |      |

\* 고령화율 : (65세이상 인구÷총인구)×100

### Ⅲ. 농어촌 복지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가. 사회보험의 내용과 문제점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음

##### 1. 국민연금

-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은 1995년에 실시되었고, 1999년에는 도시 지역까지 확대되어 제도상으로는 전 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되었음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공무원 등과 같이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단일한 연금 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음
- 1995년부터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특세를 재원으로 보조하고 있음
- 상당수의 농어업인들은 국민연금을 노후 소득보장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가입한 경우에도 낮은 소득등급에 분포되어 있어, 앞으로 수령할 연금액 규모가 작아 노후 소득 대책으로써 미흡한 실정임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역할 관계가 불명확하여 농어업인의 가입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2. 국민건강보험

- 1988년 농어촌지역에 도입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농어업인 경감혜택을 받는 농어가는 2011년 기준 4,335천 세대임
- 국민건강보험은 본인부담률 비중이 50%이상에 이를 정도로 보장성이 취약하고, 빈 축사, 휴·폐경 농지가 특례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함
- 영농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도농복합시로 편입된 농어업인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대해 불만이 큼
- 상대적으로 소득·생활수준이 높은 부업농·취미농에게도 농업인 조건만 충족되면 경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농어업인에 특화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다고 판단됨

## 3.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농업 관련 사업장 수는 2009년 기준 8,820개 이고, 가입 근로자수는 51,872명에 불과함

## 4. 산재보험

-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임
- 2000년 7월부터 근로자 1인이상 규모의 전체 사업장(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5인 이상)으로, 2005년 1월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 규모의 농림어업 법인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 기준 농업부문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42,404명에 불과함
- 많은 선진국들이 개별 농어업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농림어업 법인에 속한 근로자로 한정돼 있음

## 나. 공공부조의 내용과 문제점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함

#### <국민기초보장급여 신청가구 중 수급가구 선정 비율>

(단위: %, 사례수)

| 구분      | 농어촌   | 도시    | 전체    |
|---------|-------|-------|-------|
| 선정됨     | 21.7  | 50.9  | 46.8  |
| 선정되지 않음 | 78.3  | 49.1  | 53.2  |
| 합계      | 100.0 | 100.0 | 100.0 |

- 표에 나타난 것처럼 도시와 농어촌간 수급자 선정비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주 이유로는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어 선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 농어촌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넓을 가능성이 있음

<지역별 빈곤인구율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비율(2007)>

| 구분   | 빈곤인구비율(A) | 수급인구비율(B) | 비율(B/A*100) |
|------|-----------|-----------|-------------|
| 대도시  | 6.6       | 6.2       | 93.5        |
| 중소도시 | 6.8       | 4.4       | 65.3        |
| 농촌   | 14.8      | 7.2       | 48.6        |
| 전국   | 7.4       | 5.5       | 74.1        |

빈곤인구비율: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2.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2009년)의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음

## Ⅳ. 농어촌 복지 제도의 개선 방향

### 가. 농어촌 복지 제도 여건의 분석

#### 1. 농어촌 복지 제도 여건의 분석

- 노동력 많이 소요
- 고령자비중 높음
- 소득 불안정
-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음
- 인구밀도가 낮음
- 각종 시설 접근성 낮음

|                           | 노동력<br>많이 소요① | 고령자비중<br>높음② | 소득<br>불안정③ | 소득이 상<br>대 적 으 로<br>적음④ |
|---------------------------|---------------|--------------|------------|-------------------------|
| 인구 밀도가<br>낮음⑤<br>(인구가 적음) |               |              |            |                         |
| 각종 시설 접<br>근성 낮음⑥         |               |              |            |                         |

#### 2. 특성에 따른 문제점

- ① +② → 농업인의 질환

-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2007년 '노후보장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 월평균 의료비 지출은 약 11만 5천원 정도이며 노

인 1인당 월평균 의료비 지출은 7만 5천원 수준

-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전체 노인의 86.9%가 한달 이상의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도 71.4%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② +③ +④ → 노후 불안

- 초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나 현재 대다수의 농어촌 노인들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생활하고 있음. 통계청의 200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노인의 2/3 이상이 아무런 노후 준비가 없으며, 농어촌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건강'과 '경제력'으로 나타남
- 또한 농어업인은 가처분소득의 부족,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통계청의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어가의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44.4%(도시주민 28.5%)로 나타남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신고소득도 사업장 가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 정부 차원의 공적인 노후소득보장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많은 농업인들이 노후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 ③ +④ → 생활불안정

- 연간 농축산물 판매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농가는 0.9% 증가한 반면, 5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9.1% 감소



<1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농가수 증감률 추이>

- |   | 2006 | 2007 | 2008 | 2009 |
|---|------|------|------|------|
| ◦ 1,000만원 미만 농가수(천가구) 및 증감률(%) : 808(-7.1) 810(0.3) 779(-3.9) <b>786(0.9)</b> |      |      |      |      |
| ◦ 5,000만원 이상 농가수(천가구) 및 증감률(%) : 56(-3.4) 59(6.0) 74(24.8) <b>67(-9.1)</b>    |      |      |      |      |

<농축산물 판매금액 규모별 농가>

(단위 : 천가구, %)

|      | 합 계                     | 판 매 금 액 규 모 별        |                    |                      |                      |                    |                    |
|------|-------------------------|----------------------|--------------------|----------------------|----------------------|--------------------|--------------------|
|      |                         | 50만원<br>미 만          | 50<br>~100         | 100<br>~1,000        | 1,000<br>~3,000      | 3,000<br>~5,000    | 5천만원<br>이 상        |
| 2008 | 1,212<br>(100.0)        | 193<br>(15.9)        | 64<br>(5.3)        | 521<br>(43.0)        | 276<br>(22.8)        | 83<br>(6.9)        | 74<br>(6.1)        |
| 2009 | <b>1,195</b><br>(100.0) | <b>197</b><br>(16.5) | <b>77</b><br>(6.5) | <b>512</b><br>(42.8) | <b>263</b><br>(22.0) | <b>79</b><br>(6.6) | <b>67</b><br>(5.6) |
| 증 감  | -17.3                   | 3.7                  | 12.8               | -9.7                 | -13.3                | -4.1               | -6.7               |
| 증감률  | -1.4                    | 1.9                  | 19.9               | -1.9                 | -4.8                 | -4.9               | -9.1               |

- 최저생계비 기준의 빈곤수준에서 농어촌은 18.8%인 반면에 도시지역은 9.0%로 농어촌지역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볼 수 있음

<농어촌 조사대상 빈곤수준(경상소득 및 가구 기준, 2006)>

(단위: %)

| 구분  | 최저생계비<br>미만 | 상대빈곤         |              |              |
|-----|-------------|--------------|--------------|--------------|
|     |             | 중위 40%<br>미만 | 중위 50%<br>미만 | 중위 60%<br>미만 |
| 농어촌 | 18.8        | 24.8         | 33.7         | 39.4         |
| 도시  | 9.0         | 12.5         | 18.3         | 23.8         |
| 전체  | 10.7        | 14.7         | 21.1         | 26.6         |

-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0년 45.1%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노인 2명 중 1명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음.  
- OECD 평균 13.3%의 3.4배에 이르는 수치며 일본 22%, 그리스 23%, 미국 24%의 두 배에 달함

## □ ② +⑤ → 고독사(孤獨死)

- 농어촌의 경우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독 가구의 비중이 높음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농민자살은 2005~2007년 3년 사이 3천28명으로, 매년 1천명 이상의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파악됨
  - 세계에서 노령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한해 15천 명의 고독사 발생. '2010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연령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는 174명의 고독사 발생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인데 그 중심에 노인자살률이 자리잡고 있음. 인구 10만 명당 65세~74세 노인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 14.1명의 4~5배 이상 높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160명이 넘음

## □ ② +⑥ → 의료인프라 미흡

- 농어촌 지역이 과거에 비해 도로망과 시설은 개선되었으나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 따라서 읍면과 떨어져 있는 농어촌지역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시설과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농어촌 주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의료이용과 관련해 미치료·치료지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과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료기관 및 병상의 도농간 분포>

('09. 12월 기준, 단위: 개소, 개)

| 기관종별   | 전국                 |                     | 도시(시부)            |                    | 농촌(군부)          |                   |
|--------|--------------------|---------------------|-------------------|--------------------|-----------------|-------------------|
|        | 의료기관               | 병상                  | 의료기관              | 병상                 | 의료기관            | 병상                |
| 종합병원   | 312                | 136,601             | 290               | 125,324            | 22              | 5,277             |
| 병원     | 1,129              | 130,788             | 954               | 106,722            | 175             | 24,066            |
| 요양병원   | 762                | 89,503              | 621               | 74,381             | 141             | 15,122            |
| 의원     | 27,014             | 91,762              | 24,760            | 82,473             | 2,344           | 9,289             |
| 치과병·의원 | 14,249             | 330                 | 13,239            | 305                | 1,010           | 25                |
| 한방병·의원 | 11,856             | 9,638               | 10,824            | 9,217              | 1,032           | 421               |
| 조산원    | 38                 | 77                  | 36                | 77                 | 2               | 0                 |
| 합계     | 55,450<br>(100.0%) | 452,699<br>(100.0%) | 50,724<br>(91.5%) | 398,499<br>(88.0%) | 4,726<br>(8.5%) | 54,200<br>(12.0%) |

자료: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참고자료」, 2010.

## 나. 농어촌 복지 제도 개선의 과제

###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철학)>

- ◇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실제적이고 농어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함
-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거주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함
- ◇관련 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함

### 1. 국민연금 개선방안

- 농업인들의 소득활동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
  - 농어업인의 실제소득에 가장 근접한 소득 수준을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개발
  - 국고보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조를 단계적으로 확대

## □ 도농복합시 편입지역의 지원 유지

- 영농종사기간 5년 이상된 농업인들에 한해 해당 지역이 도농복합시로 편입되더라도 국민연금 경감 지원을 유지

## 2. 국민건강보험 개선방안

### □ 보험료 부과방식의 개선

-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부과표준소득에서 특례를 적용(경감 확대 및 제외)
- 빈 축사·농업용 트럭 등 교환가치가 낮은 농업시설물·장비에 대한 재산비례보험료 부과 폐지
  -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비례 단일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경감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

###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검토

- 건강보험 지원은 소득에 반비례 하여 지원되어야 하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50%를 농민에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농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자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많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방향 검토

## <연도별, 금액별 건강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 세대)

| 연도<br>지원금액 구간      | 총합계       | 2006.12 | 2007.12 | 2008.12 | 2009.06 |
|--------------------|-----------|---------|---------|---------|---------|
| 총 합 계              | 1,928,811 | 514,843 | 497,565 | 470,320 | 446,083 |
| 10,000원이하          | 356,806   | 113,417 | 91,489  | 77,177  | 74,723  |
| 10,001~20,000원이하   | 476,025   | 157,789 | 126,265 | 98,930  | 93,041  |
| 20,001~30,000원이하   | 430,947   | 118,372 | 116,213 | 101,518 | 94,844  |
| 30,001~40,000원이하   | 327,379   | 73,501  | 86,670  | 86,343  | 80,865  |
| 40,001~50,000원이하   | 185,701   | 32,168  | 44,386  | 55,864  | 53,283  |
| 50,001~100,000원이하  | 145,766   | 18,988  | 31,515  | 48,200  | 47,063  |
| 100,001~150,000원이하 | 5,744     | 550     | 950     | 2,136   | 2,108   |
| 150,001~200,000원이하 | 176       | 31      | 22      | 61      | 62      |
| 200,001원이상         | 267       | 27      | 55      | 91      | 94      |

### 3. 농어촌 의료 개선방안

#### □ 정부투자과 보조가 들어가는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함

- 의료접근성이 전무한 지역을 의료서비스 확충지역으로 분류하고 정부투자과 보조가 들어가는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함. 이런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등은 민간에 위탁한다고 해도 운영이 어려움. 현재 '농어촌보건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민간의료기관이더라도 농어촌에 있으면 정부가 보조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불투명한 회계로 소득 정도가 파악이 안되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 보조인지에 대한 기준선이 정확히 마련이 안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보조가 어려움.

#### □ 의료소의 기준을 중심으로 농어촌 의료를 재분류

- 일본의 경우 불채산 지역(채산성이 안맞는 지역)을 정의하고 있고, 미국은 '의료서비스소외지역'등의 기준을 통해 특별예산을 보조하고 있음(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역할분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 의사들이 농어촌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한 만큼, 중앙정부가 농어촌과 도서벽지에 대한 기준 설정과 투자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농어촌의 의료행위가 어려울 수 밖에

없음.

- 농부증클리닉 전문병동 확대
  - 농어촌에 만연되어 있는 농부증을 완화하기 위해 각 도별 국립의료원에 농부증전문병동 설치 (9개도, 서울제외)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 □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개선

- 농업인의 실제소득 계산방식에 있어 현행 '농축산물 표준소득표'는 중상위 기술 수준의 선도농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영세농가에 작용할 때에는 표준소득액의 일정비율만큼 감액하여 적용해야 함
- 영세농가의 노동 능력과 영농 실정에 맞는 농업소득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난방비, 교통비 등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함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방식 개선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대폭인하하고, 농지는 농작물의 판매에 따른 순소득만을 평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휴·폐경농지, 빈 축사 등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에 소득환산율을 낮추거나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

- 현행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부양능력 없음'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180% 수준으로 상향 조정
- 부양능력 판정 재산의 기본공제액 기준(농촌 2,900만원)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 5. 산재 수준의 농업인 노동재해보상보험법 도입

### □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확대 및 정부 지원 확대

- 현행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의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 비율을 국고 60% 지방비 25% 자부담 15%으로 변경하여 재해보험의 가입 유도
- 태풍,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심각해져 농산물의 주산지가 점차 사라지며 이에 대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한 농산물의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조속히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함

### □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필요

- 인구고령화율 10%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선진국가들의 약 45~68% 수준. 일인당 국민소득 2만불 기준으로 보면 OECD평균의 약 38%수준
  - 복지관련 지출은 유럽복지국가들의 평균적인 복지지출의 32%수준에 불과
- 농어촌 보건복지특별법에 사용되는 재원은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해 마련되고 있음. 이 재원은 2014년까지의 한시법이므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함.
-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농특세를 유지하여 복지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하고, 매년 5%이상의 복지예산을 확충하여 농어촌의 복지형평성 유지

#### <인구 고령화율 10%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 구분             | 호주    | 캐나다   | 일본    | 한국    | 뉴질랜드  |
|----------------|-------|-------|-------|-------|-------|
| 고령화율 10% 도달 시점 | 1982년 | 1983년 | 1984년 | 2007년 | 1981년 |
| 노인인구비율         | 9.9   | 9.9   | 9.9   | 9.9   | 9.9   |
| 공공사회복지지출       | 11.1  | 16.7  | 11.3  | 7.5   | 17.2  |

※ 출처: OECD Stats.

<GDP 대비 사회지출 비용(1990/2005)>

|      | 스웨덴  | 덴마크  | 노르웨이 | 핀란드  | 영국   | 독일   | 일본   | 한국  |
|------|------|------|------|------|------|------|------|-----|
| 1990 | 30.5 | 25.5 | 22.6 | 24.5 | 17.2 | 22.5 | 11.2 | 3.0 |
| 2005 | 29.4 | 26.9 | 21.6 | 26.1 | 21.3 | 26.7 | 18.6 | 6.9 |

□ 농어촌 복지 총괄 담당부서 운용

-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으로 분리되어 있는 농촌관련 복지 특별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고, 중앙부처의 농촌복지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 또한 농어촌 의료, 보건, 복지를 책임지고 총괄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어 상시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

#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

2011. 8. 31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  
다함께 자라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

# ☐☐ 목 차 ☐☐

I. 농어촌 현황 ..... 1

II.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추진 현황 ..... 3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개요 ..... 3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 ..... 7

3.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운용 ..... 8

III. 향후 개선 방향 ..... 9

[참고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주요 성과 및 목표 ..... 10

[참고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 ..... 12

[참고3] 외국의 사례 ..... | 14

[참고4] 스마일 농어촌운동 추진계획 ..... 16

# I

## 농어촌 현황

### □ 농어업 ·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 인구 감소 : 농어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0%**(‘1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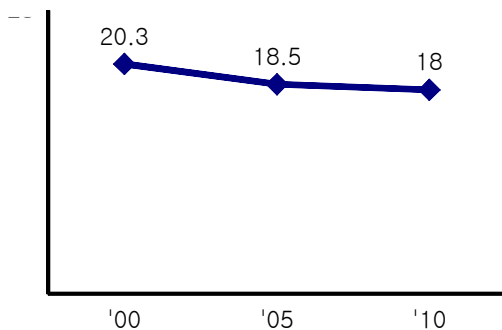
\* 총인구 중 농어촌인구 비중 : (‘00) 20.3 → (‘05) 18.5 → (‘10) 18.0

○ 고령화 : 65세 이상 농어촌인구 비율 **20.9%**(전국비율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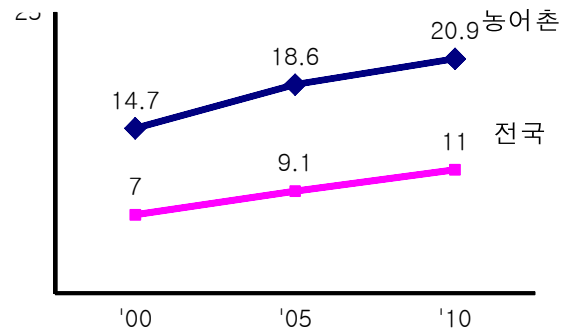
\* 농어촌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 (‘00) 14.7 → (‘05) 18.6 → (‘10) 20.9

○ 도시와의 소득격차 : 농가소득은 도시소득의 **66%**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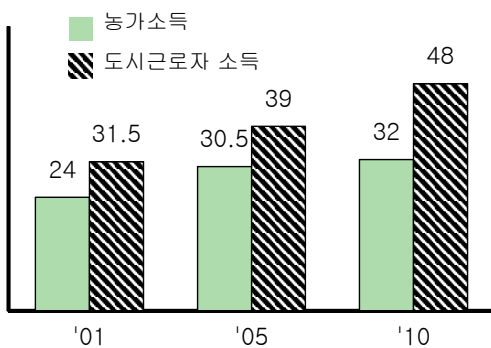
<농어촌 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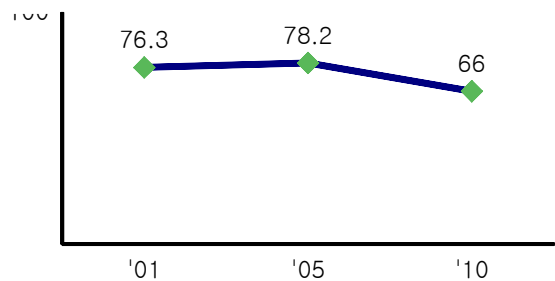
<65세 인구비율(%)>



<가구소득(백만원)>



<도시가구소득대비 농가소득 비율(%)>



## □ 도시와 농어촌 간 공공서비스 격차 등 생활여건 미흡

○ **교육** : 농어촌 지역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

\* 농어촌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비율('10) : 40.3%(도시 1.9%)

\* 농어촌 초등학교 복식학급 학교 비율('08) : 28.6%(도시 1.7%)

○ **의료** : 농어촌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부족 및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 불리

\* '10년도 병·의원 수(시지역/군지역) : 50,993개소/4,776개소

\* '10년도 약국 현황(시지역/군지역) : 19,159개소/1,937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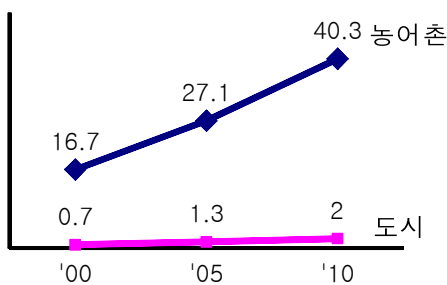
○ **기초인프라** : '삶의 질 향상 계획 추진' 등으로 농어촌에 많은 투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초인프라, 보육여건, 문화여건 등 부족

\* 면지역 상수도보급률('09) : 62%(동지역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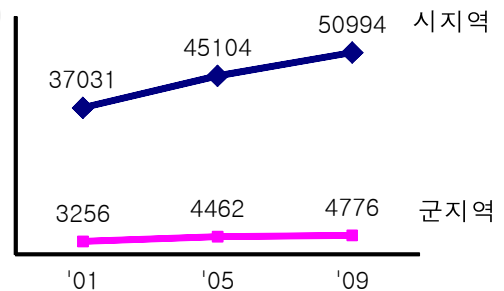
\* 군지역 하수도보급률('09) : 52%(시지역 93)

\* 읍·면(동) 중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동) 비율('09) : 3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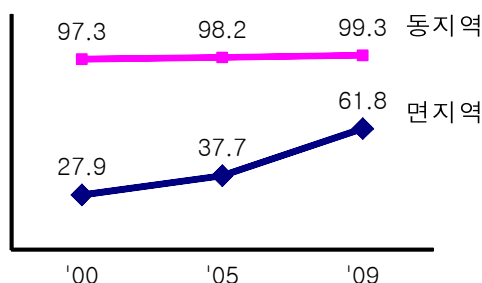
<소규모학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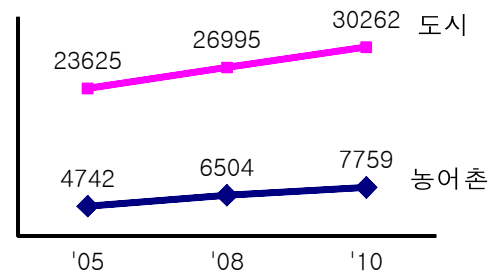
<병의원수(개소)>



<상수도보급률(%)>



<영유아 보육시설(개소)>



## II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추진 현황

## 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개요

####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04.3월)

- 제정 배경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낙후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 \* 농어가 인구 비중 : ('90) 16.7% → ('00) 9.2% → ('04) 7.5%
  - \*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00) : 농어촌 20.4%, 도시 4.6%
- 목적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 내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구성 및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농어촌 복지증진·교육여건 개선·지역 개발 등을 위한 개별 사업의 추진근거 마련

####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구성('04.12월)

- 구성 : 위원장(총리), 11개부처 장관 및 국무총리실장, 민간위원 9명
  - \* 11개 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 역할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 기본계획 심의·평가
- 실무위원회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농식품부 장관), 11개부처 차관, 국무차장,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

## 다 제1차 기본계획('05~'09) 수립('05.4월)

-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화 등 4대 부문\* 133개 과제 추진
  - 농어촌 문제 대응을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추진으로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
  - 5년간 투융자 계획 20.3조원, 투융자 실적 22.8조원
- 분야별 성과
  -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 : ('04) 35% → ('09) 49
    - \*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 ('04) 1,170개소 → ('09) 2,276
    - \* 건강관리실 : ('04) 884개소 → ('07) 1,982 / 국공립 보육시설 : ('04) 222개소 → ('09) 478
  - (교육)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영유아 보육기반 강화
    - \* 우수고 육성 : ('04) 7개교 → ('09) 86 / 기숙형고교 150개 선정·지원
    - \* 농어촌대학생 학자금융자 : ('04) 21억원 → ('09) 475
    - \* 농어촌 전원학교 110개교('10) 및 연중돌봄학교 378개교('09) 선정·지원
  - (지역개발) 상하수도, 주택, 문화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
    - \*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 ('04) 35.2% / 31.9% → ('09) 61.8 / 51.5
    - \* 공공도서관/체육문화시설 확충 : ('04) 171개소 / 2개소 → ('09) 246 / 13
  - (복합산업화)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소득향상 및 경제 활성화
    - \* 농공단지(지정) 개소 확대 : ('04) 322개소 → ('09) 401
    - \* 체험마을 방문객수/매출액 : ('04) 93천명/74억원 → ('09) 433/532
    - \* 산림휴양시설 확충 : ('04) 112개소 → ('09) 281

## □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

- S/W 제공, 접근성 개선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교육 서비스 전달 미흡
  - 영세·고령농,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 기반 강화 필요
- 1차 계획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기획·조정 기능 발휘에 한계
  - 농어촌 삶의 질 실태에 관한 지표개발,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분석이 미흡하여 개선방안 마련 등 환류 부재
- 정주계층별(마을-읍·면-중소도시) 특성을 반영한 개발 미흡

## 라 제2차 기본계획('10~'14) 수립('09.12월)

- 보건·복지, 교육, 기초인프라, 경제활동, 문화·여가, 환경·경관, 지역역량 등 7대 부문\* 133개 과제 추진(34.5조원)
- 체계적 계획 수립을 위해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실시(통계청, '08.12월)
  - 전반적인 안전수준, 생활환경 쾌적성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높은 반면, 복지, 교육 및 기초생활여건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낮게 조사

| 조사항목         | 지역   | 만족도 (%) |      |      |
|--------------|------|---------|------|------|
|              |      | 만족      | 보통   | 불만족  |
| 전반적 안전수준 만족도 | 농산어촌 | 34.0    | 46.5 | 19.5 |
|              | 도시   | 30.3    | 49.5 | 20.2 |
| 전반적 복지수준 만족도 | 농산어촌 | 15.2    | 49.8 | 35.0 |
|              | 도시   | 18.9    | 52.7 | 28.4 |
| 자녀의 교육여건 만족도 | 농산어촌 | 13.9    | 50.1 | 36.0 |
|              | 도시   | 20.5    | 55.2 | 24.3 |
| 생활환경 쾌적성 만족도 | 농산어촌 | 50.0    | 35.6 | 14.4 |
|              | 도시   | 38.4    | 36.8 | 24.8 |
| 기초생활여건 만족도   | 농산어촌 | 32.5    | 34.8 | 32.7 |
|              | 도시   | 39.1    | 40.4 | 20.5 |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결과, 1차 기본계획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제2차 기본계획 마련

□ 접근성 개선 및 농어촌 특성 고려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에서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농어촌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8개분야 31개 항목)

- (농어촌영향평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정책을 분석·보완

\* 특성 : 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 영세성,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

□ 평가·환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 활성화

- 농어촌서비스기준·농어촌영향평가지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이행 점검

-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대한 체계적 분석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위원회의 기획기능 강화

□ 삶의 질 향상 계획과 함께 「스마일 농어촌운동」을 추진하여 침체된 농어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농어촌 활력 창출

- 자율(自律), 창의(創意), 상생(相生)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범국민 운동

- 10만 농어촌 리더 육성, 100만 재능기부자 확보, 2만 도농연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색깔있는 마을 1만개 발굴·육성



## 2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

### □ 개념 및 도입 배경

○ (개념)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8개 분야\* 31개 항목)를 설정·관리하는 제도

\* 8개 부문 :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 (도입배경)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수준 낮음

- 제2차 기본계획에서 수요자 중심의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09.12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근거 마련('10.7월)

### □ 운용 방안

○ (실태조사) 농어촌서비스기준 8개 분야 31개 항목의 목표 달성 정도를 51개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파악

- 부처·지자체 협조를 받아 매년 시·군 단위(일부 읍·면 단위)로 실시

\* 참고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 (결과분석) 전문연구기관(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역별·항목별 달성정도 차이 등 실태조사 점검·분석, 개선방안 제시

○ (결과활용) 제도개선, 지자체 계획·삶의 질 계획 등에 반영

- (사무국) 총괄 평가 후 위원회 보고 → (위원회)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지자체에 제도개선, 예산 편성방향 등에 대해 권고

-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결과분석 및 우수사례 보고서 발표

### □ 개념 및 도입 배경

- (개념) 정책집행으로 인해 농어촌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할 때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하도록 하는 제도

\* 영향 : 지역경제, 경관, 전통문화 및 공동체, 인구이동, 농어촌서비스기준

\*\* 특성 : 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 영세성,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

- (도입배경)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 발생 우려

\* 영국·뉴질랜드(rural proofing), 캐나다(rural lens)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도 운용 중

◇ 지역아동센터(10년 2,946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도시와 농어촌에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나, 농어촌 아동들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셔틀버스 원거리 운행, 문화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도시 이동, 자원봉사자 부족 등으로 도시보다 많은 비용 소요

\*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방안 연구(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운용 방안

- 평가대상 :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 법령, 제도 중 도시와 농어촌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특히 복지, 교육, 고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도시와 농촌간 정책 수혜도에 격차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정책 등

- 평가유형 : 자체평가와 전문평가

- 자체평가 : 각 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소관 정책이나 사업 중에서 평가대상 선정, 매뉴얼에 따라 직접 평가

\* '11년도에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 9개부처 9개도에서 1개 과제씩 실시

- 전문평가 : 삶의 질 관련 핵심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 중 위원회가 선정하는 정책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이 평가

\* '11년도에는 여성 일자리 확대정책, 방과 후 학교 사업을 선정·평가 중

### Ⅲ

## 향후 개선 방향

-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를 통해 정책공모제 등 정기적 의견수렴 창구 마련
  - 향후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에 반영하거나 농어촌영향평가, 삶의 질 계획 심층평가 등의 평가과제 선정에 활용
- 농어촌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세미나,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부처의 참여 확대
  - \* 도농간 공공서비스 격차완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11.6월) :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180여명 참석
  - \*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 ('11.7월) :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 주민 등 25명 참석
- 농어촌 정책의 중요성 증대와 업무범위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활성화 및 인력 확대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전문지원기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11.7월 개정)됨에 따라 '12년부터 지정·운영 예정
- 농어촌 계획제도 선진화
  -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역개발계획은 지나칠 정도로 많으나, 지역을 포괄하는 전략적·통합적 계획은 미흡
    - \* 농어촌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27개 법률이 있으며, 총 42개 계획을 수립
  - 계획적 지역개발 체계 확립을 통해 농어촌 지역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난개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참고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주요 성과 및 목표

| 분 야                   |                                       | 2004년 | 2009년 | 2010년 | 2014년  |   |
|-----------------------|---------------------------------------|-------|-------|-------|--------|---|
| 보건<br>복지<br>증진        | ·연금보험료 1인당 지원액(천원)                    | 168   | 386   | 408   | 437    |   |
|                       | ·농업인재해공제 가입률(%)/사망 시 보상(백만원)          | 35/7  | 49/60 | 53/60 | 60/100 |   |
|                       | ·수산인재해공제 가입률(%)/사망 시 보상(백만원) *'09신규   | - / - | 22/45 | 30/45 | 45/80  |   |
|                       | ·농어촌보육시설 설치(개소)                       | 222   | 478   | 497   | 621    |   |
|                       | ·취약농가 인력(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천농가) *'06신규 | -     | 31    | 33    | 35     |   |
|                       | ·응급의료기관 설치율(%)                        | 74    | 75    | 78    | 100    |   |
|                       | ·119구급센터 설치(개소) *'10신규                | -     | -     | 50    | 175    |   |
| 교육<br>여건<br>개선        | ·연중돌봄학교 지정(학교 수) *'09신규               | -     | 378   | 383   | 383    |   |
|                       | ·농어촌대학생 학자금융자(억 원)                    | 21    | 475   | 505   | 605    |   |
|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거점학교 지정 *'08신규           | -     | 46    | 60    | 100    |   |
|                       | ·월어민 영어수업 학교 수 *'08신규                 | -     | 3,000 | 3,794 | 4,000  |   |
| 기초<br>생활<br>인프라<br>확충 | ·상수도 보급률(%)                           | 35    | 62    | 63    | 75     |   |
|                       | ·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                           | 농촌    | -     | 176   | 221    | - |
|                       |                                       | 어촌    | 134   | 183   | 193    | - |
|                       |                                       | 산촌    | 108   | 204   | 240    | - |
|                       | ·농어촌 전원마을 조성(개소)                      | 2     | 102   | 119   | 180    |   |
| ·불량주택 개량(천호)          | 418                                   | 449   | 454   | 486   |        |   |

| 분 야                  |  | 2004년   | 2009년   | 2010년   | 2014년     |
|----------------------|--|---------|---------|---------|-----------|
| 경제<br>활동<br>다각화      | ·농공단지 확대(지정/준공)                          | 322/297 | 401/339 | 421/347 | 435/-     |
|                      | ·농어촌체험마을 방문객수(천명)/매출액<br>(억 원)           | 93/74   | 433/605 | 532/794 | -         |
|                      | ·농식품클러스터 선정(개소) *'05신규                   | -       | 54      | 54      | 84        |
|                      | ·향토산업 육성(개소) *'09신규                      | -       | 79      | 109     | 199       |
|                      | ·산림휴양시설 조성(개소)                           | 112     | 281     | 299     | 379       |
| 문화<br>여가<br>여건<br>개선 |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개소) *'06신규                  | -       | 246     | 258     | 260       |
|                      | ·지방테마과학관 건립(개소) *'05신규                   | -       | 17      | 22      | 42        |
|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조성(개소) *'06신규                 | -       | 13      | 23      | 53        |
|                      | ·국립예술단체 방문공연 관람(개소/천명)<br>*'09신규         | -       | 61/53   | 51/55   | 80/75     |
| 환경<br>경관<br>개선       | ·하수도 보급률(%)                              | 32      | 52      | 53      | 71        |
|                      | ·화학비료사용량 절감(kg/ha)                       | 385     | 292     | 232     | 200       |
|                      | ·목재펠릿 공급확대(펠릿보일러:대/펠<br>릿제조시설:개소) *'09신규 | -       | 3,000/4 | 4,000/8 | 10,000/10 |
| 지역<br>발전<br>역량<br>강화 | ·도농교류활성화 인적역량강화 교육 인원<br>(천명) *'05신규     | -       | 2.6     | 3.0     | 6.0       |
|                      |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명) *'06신규                   | -       | 465     | 605     | 1,000     |

## 참고2

#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

| 부문           | 항목           | 세부내용  |
|--------------|--------------|---|
| 주거<br>(5)    | 주택           |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br>※ 농어촌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비율('08) : 77.9%  |
|              | 난방           |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br>※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05) : 29.7%                                     |
|              | 마을공동 시설      |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              | 상수도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br>※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09) 61.8%  |
|              | 하수도          |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br>※ 군지역 하수도 보급률('09) :51.5%  |
| 교통<br>(3)    | 대중교통         |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br>※ 군지역 마을 중 79.5%가 기준 달성('05)   |
|              | 여객선          |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
|              | 인도(人道)       |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 교육<br>(6)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              | 고등학교         |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br>※ 농어촌 140개 시군 중 119개 시군에 150개 기숙형 고교 선정   |
|              | 폐교           |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              | 방과후 학교       |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한다.   |
|              | 의견수렴         |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
|              | 평생교육         |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
| 보건 의료<br>(3) | 진료 서비스       |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br>※ 일반병의원 수 : 일반시(217.8개소), 군(23.8), 한방병의원 수 : 일반시(82.3개소), 군(9.1), 치과병의원 수 : 일반시(108.9개소), 군(8.1) |

| 부문          | 항목               | 세부내용  |
|-------------|------------------|---|
|             | 순회 방문            |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
|             | 의약품 구입           |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br>※ 140개 농어촌 시군 중 96.4%가 달성('08)   |
| 복지<br>(5)   | 노인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 청소년              |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br>※ 163개 시군 중 153개 시군에 설치('08)  |
|             | 아동               |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br>※ 농어촌 140개 시군의 읍면 중 42.6%의 읍면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
|             | 영유아              | ※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총 7,641개(동 1,006개소, 읍 4,088, 면 2,513)  |
|             | 다문화 가족           |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br>※ 163개 시군 중 127개 시군 설치                                     |
| 응급<br>(5)   | 응급 서비스           |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
|             |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
|             | 소방 서비스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
|             | 도난 방지            |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
|             | 경찰 서비스           |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
| 문화<br>(3)   | 독서               |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
|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br>※ 163개 시군 중 160개 시군에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있음                   |
|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
| 정보통신<br>(1) | 초고속망             |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br>※ 군지역 광대역 통합망(BcN) 구축률 : 77%  |

**<영국 : Rural Proofing제도>****□ 근거 규정**

-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은 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법규나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자문에 관한 정부 규칙(Code of Practice on Consultation)’이 정하는 절차, 범위, 내용 등에 따라 서면 형식에 기초하여 공식적인 자문이나 협의를 수행하여야 함
  - 자문에 관한 정부규칙에 Rural Proofing을 ‘특정 영향 평가 (specific impact test)’중 하나로 명시하여 구속력을 부여
- ※ Code는 성문화된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관행과 규범을 중시하는 영국의 불문법적 전통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시행규칙과 같은 역할을 함

**□ 주요 내용**

- 정책입안자가 정책 수행시 농어촌지역에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
- 농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를 평가
- 평가에 따라 농어촌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정책을 조정

**<영국 : 농어촌서비스기준(Rural Service Standard) 제도>****□ (RSS 제정 배경) 농촌 문제의 심각성과 범정부적 대책마련에 대한 부처 간 인식 공유**

- 광우병 창궐로 인한 농촌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쇠퇴
- 도농 간 양극화, 농촌 주민 삶의 질 악화 등의 문제 확대
- 농촌 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부처들 간 공통된 인식 증가
- 2000년 RSS를 제정하여 「농촌백서」(2000)를 통해 공표
- RSS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할 주요 서비스의 National Minimum을 의미



## □ (RSS 주요 내용)

- 교육 및 아동 서비스, 광대역 통신, 사회적 돌봄, 우체국 서비스, 보건, 인터넷 접속, 긴급 서비스, 교통의 8개 분야, 13개 서비스 기준 제시
- 시설 또는 기능의 폐쇄 방지, 접근성 수준 지표, 대응 시간, 전화 서비스, 온라인 접속, 교통요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기준 제시

## □ (RSS의 부처 간 협력 및 운영체계) 환경식품농촌부(DEFRA) 산하에 CRC(구 Countryside Agency)을 별도로 두어 부처 간 협력체계 하에 RSS 제정

- CRC는 DEFRA 산하의 전문적인 대 정부 조언기관으로 농촌서비스기준 항목을 선정하고 기준을 설정(재선정 및 재설정 포함). 또 매년 농촌의 실태 파악을 위한 State of the Countryside 발간
- 내각의 농촌문제 분과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Rural Affairs)는 Countryside Agency와 농촌의 이해당사자들인 국가 및 지역 패널들의 관점에서 농촌서비스기준의 운영 실태를 매년 검토(annual review)

## <캐나다 : Rural Lens제도>

### □ 목 적

-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 사업이 농촌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문하도록 하여 농촌의 문제 인지
- 새로운 연방정부 정책의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연방 내각으로 하여금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농림부내 농촌사무국(Rural Secretariat)과 Canadian Rural Partnership에서 추진

### □ 주요내용

- 정책의 설계, 개발, 시행과정에서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판단
- 정책이 농촌주민의 삶의 질(보건, 교육, 경제 및 지역사회의 이익)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를 판단
- 농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 변화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농촌에 대한 영향 평가가 필요한 단계(사전, 사후 평가) 결정 등

## 참고4

# 스마일 농어촌운동 추진계획

### □ 추진배경

- 인구감소,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격차 심화로 침체된 농어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 추진

\* 농어촌(읍·면) 인구 : ('00) 20.3% → ('10) 18.0%

\* 농어촌 고령화(65세 이상 인구비중) : ('00) 14.7% → ('10) 20.9%

자율(自律), 창의(創意), 상생(相生)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스마일 농어촌운동』을 전개하여 농어촌을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할 미래의 공간으로 조성

### □ 전략목표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 특산품, 경관, 관광, 전통문화, 음식, 축제 등 마을이 지닌 잠재적 자원을 발굴하여 차별화
  - 장기적으로 색깔 있는 마을 1만개 발굴·육성('13년 3,000개 발굴)

### □ 주요 추진과제

- 색깔 있는 마을 등 변화를 이끌 농어촌 리더 10만 육성('13년)
- 농어촌 활력 운동에 도시민의 대대적인 참여 유도
  - 100만 재능기부자 확보('13년), 2만 도·농 연대체계 구축('13년)
- 민간 중심 국민운동추진위원회(중앙), 농어촌 현장포럼·농촌 활력창출 지원센터·마을협의체(지방) 설치 유도
  - 지역대학 지원센터에 1천명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민간 자율 운동 지원

### □ 참여 촉진

-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 제정·시상,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 농어촌 포괄보조사업,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 등과 연계 추진

# 마을의 색깔유형



색깔 있는 마을은 농어업에서 농어촌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마을발전 유형을 포괄

※ 색깔있는 마을 유형별 사례

| 대분류   | 중분류      | 마을 |    |          | 마을 특징   |
|-------|----------|----|----|----------|---|
|       |          | 시도 | 시군 | 마을명      |   |
| 농어업형  | 유기농·품질인증 | 충남 | 홍성 | 문당마을     | 오리농업을 통한 친환경 쌀 생산 및 순환농업의 모델 제시                     |
|       | 품목특화     | 경기 | 가평 | 잣마을      | 국내 최대 잣나무 숲(축령산)에서 채취한 잣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 음식, 체험개발     |
|       | 품목다각화    | 전북 | 익산 | 송천장수마을   | 도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로 블루베리를 지역특화 품목으로 개발하여 소득증대 기여          |
|       | 기술혁신     | 충북 | 증평 | 정안마을     | 품종을 색으로 개량한 차별화된 농산물생산(색깔감자·고구마)으로 마을 부가가치 높임       |
| 유통가공형 | 직판       | 강원 | 양양 | 송천떡마을    | 개별 판매하던 떡을 마을공동작업과 판매장을 만들고 “송천떡”으로 브랜드화하여 매출증가     |
|       | 저장·단순가공  | 강원 | 횡성 | 산채마을     | 산채를 테마로 건강한 먹거리 체험과, 마을에서 생산된 각종 산채를 냉동 건조하여 연중판매   |
|       | 식품가공     | 전북 | 순창 | 고추장 익는마을 | 고추장 시원지의 특성 활용하여 전통식품 가공장류 생산·판매 및 고추장 만들기 체험 운영    |
|       | 로컬푸드     | 전북 | 완주 | 상하보마을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소비(유정란, 장류, 텃밭분양 등)      |
|       | 전통식품     | 전남 | 해남 | 김치마을     | 김치를 주요테마로 김치담그기 체험, 묵은지·채래·기능성김치 등 특성화된 김치개발        |
| 도농교류형 | 캠핑       | 충남 | 금산 | 부리수통마을   | 금강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300여명 캠퍼 수용가능)하여 가족, 단체 단위의 방문객을 맞이함 |
|       | 민박펜션     | 전북 | 남원 | 매동마을     | 마을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농촌체험관광 민박사업 전주민동참(100실, 400명 입실가능) |
|       | 치유       | 강원 | 양구 | 숨골권역     | 산채와 약초를 활용 아토피 등 도시형질병을 치유하는 식생활 개선·마을치유 프로그램 운영    |
|       | 경관       | 경남 | 남해 | 다랭이마을    | 45°경사의 비탈에 석축을 쌓아 108층이 넘는 계단식 논을 일구어 놓은 마을         |
|       | 농어촌유학    | 충북 | 단양 | 한드미마을    |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체험마을 주도로 사업을 이끌어 감       |
|       | 농림어업체험   | 제주 | 제주 | 낙천마을     | 역사문화 자원의 체계적 보호 및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제공            |

| 대분류   | 중분류        | 마을 |    |           | 마을 특징  |
|-------|------------|----|----|-----------|--|
|       |            | 시도 | 시군 | 마을명       |  |
| 도농교류형 | 역사문화       | 충남 | 아산 | 외암마을      | 500년 전통의 민속마을로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       | 1사1촌       | 경북 | 고령 | 개실마을      | 도시 대기업과 자매결연을 통해 서비스·디자인 교육 등을 지원받아 경쟁력 있는 마을로 발전  |
|       | 레포츠        | 강원 | 영월 | 동강생태마을 등  |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동강의 체계적 보존 및 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래프팅 등)   |
|       | 음식체험       | 전남 | 장흥 | 백자골생태체험마을 | 장흥 한우, 키조개, 표고버섯, 적토미와 함께하는 장흥 사합                  |
|       | 음식체험       | 충북 | 괴산 | 둔울울갱이마을   | 다슬기를 소재로 한 '둔울울갱이 축제'를 개최하는 등 먹거리를 소재로 다양한 체험 운영   |
|       | 학습연계       | 강원 | 정선 | 개미들마을     | 농촌 체험학습과 전통문화체험을 연계한 수학여행 유치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납품    |
|       | 주말농장       | 경기 | 포천 | 숯골마을      | 농촌 체험을 위한 주말농장 운영, 장독 분양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제공          |
|       | 임대분양       | 충남 | 금산 | 바리실마을     | 사과 및 인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칠백의총 등 관광자원을 결합, 사과나무 분양   |
| 생활기반형 | 마을개발·인프라   | 전남 | 장성 | 드림빌마을     | 도시 젊은인력을 미래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농어촌뉴타운 조성 |
|       | 권역개발       | 경남 | 남해 | 신전권역      | 지역자원 발굴과 권역내 토론문화 정착으로 권역내 5개 마을의 주민간 화합, 공동체 회복   |
|       | 청정에너지      | 경남 | 산청 | 갈전마을      | 민들레 공동체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저탄소(태양광,태양열,지열) 녹색마을 만들기 운동 실행 |
|       | 주말주택(5도2촌) | 경기 | 연천 | 새동지마을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판매 및 체재형 주말농장(클라인가르텐) 등 농촌프로그램 운영       |
|       | 장수촌        | 강원 | 동해 | 봉정마을      | 고령화된 농촌에서 노인층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끌어낸 대표적 건강 장수마을          |
|       | 복지서비스      | 전남 | 영광 | 여민동락공동체   |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마을기업운영으로 지역사회 환원               |
|       | 예술인촌       | 충북 | 진천 | 공예마을      | 공예인들을 주축으로 조성된 마을로 자연경관과 전통공예를 활용한 체험거리, 볼거리 등 제공  |
|       | 생태환경보전     | 경기 | 파주 | DMZ해마루촌마을 | DMZ자연생태와 안보문화관광을 연계하여 자연생태계를 직접 보고 배우는 체험프로그램 제공   |
|       | 농어촌형제조업    | 전남 | 여수 | 봉전어촌계     | 새고막 껍데기를 재활용하여 건강식품, 닭사료, 비료 등으로 활용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진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
|----------|--|

발의연월일 : 2011. 8.

발 의 자 : 조진래 의원

찬 성 자 : 인

## 제안이유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농어촌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에서 농어촌 지역 농어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때에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경감되는 부분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농어민의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질환(농부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농어민에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에 농어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이하인 시의 동지역을 농어촌으로 포함함으로써 소규모 도농통합시의 동지역 거주 농어민이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농어촌 지역에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규모이하인 시의 동지역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의료기관 중 농어민이 농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질환의 예방·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농어민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실

시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는 제외)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

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절차·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함(안 제31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읍·면의 전지역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동(洞)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규모 이하인 시의 동지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농어민질환센터지정) ① 국가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농어민이 농어업 활동 중 발생한 질환의 예방·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국가건강검진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청소년시설의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다)을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중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절차·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농어촌</u>”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p>가. 읍·면의 전지역</p> <p>나. 동(洞)의 지역중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p> <p>2.·3. (생략)</p> <p><u>&lt;신설&gt;</u></p> | <p>제2조(정의) -----<br/>-----.</p> <p>1. “<u>농어촌</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p>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중 읍·면의 전지역</p> <p>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동(洞)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p> <p>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지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규모 이하인 시의 동지역</p> <p>2.·3. (현행과 같음)</p> <p><u>제12조의2(농어민질환센터지정)</u></p> |

<신 설>

① 국가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농어민이 농어업 활동 중 발생한 질환의 예방·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국가건강검진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동법 제66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제21조의2(청소년시설의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 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다)을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  
-----  
-----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  
예산의 범위에서-----

-.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료의 지원 절차·서식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농어민의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질환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이하인 시의 동지역을 농어촌으로 포함함.

## 2.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중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농어민의 질환(농부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이하인 시의 동지역을 농어촌으로 포함하는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실질행 소요액을 추산하기 어려움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 4. 작성자

조진래 의원실 서일교 비서관(02-788-2587)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진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
|----------|--|

발의연월일 : 2011. . .

발 의 자 : 의원

찬 성 자 : 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부분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각 사업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림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지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 다른 법률에서 국가의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법의 세출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세출항목으로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명시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바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아.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 략)</p> <p>②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 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가. (생 략)</p> <p><u>&lt;신 설&gt;</u></p> <p>나. ~ 마.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바. (생 략)</p> <p>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 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p> | <p>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 음)</p> <p>②-----<br/>-----.</p> <p>1. (현행과 같음)</p> <p>2. -----<br/>-----<br/>-----<br/>-----</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u></p> <p>다. ~ 바. (현행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p> <p>사. <u>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u></p> <p>아. 「<u>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 동 지원에 관한 법률</u>」 제 2조에 따른 <u>농외소득원 개 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u></p> <p>자. (현행 바목과 같음)</p> <p>3. -----<br/>-----</p> |

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  
융자

가. ~ 다. (생략)

<신설>

라. (생략)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  
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 바. (생략)

<신설>

사. (생략)

5. ~ 7. (생략)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  
교육 지원

마. (현행 라목과 같음)

4. -----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아. (현행 사목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진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
|----------|--|

발의연월일 : 2011. 8.

발 의 자 : 조진래 의원

찬 성 자 : 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지역에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형성된 다문화가족이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상당수가 영세 농어업인으로 서 결혼이민자는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전문농어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營農)·영어(營漁)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농어업인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복지증진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이 전문농어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營農)·영어(營漁)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농어업인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영농·영어기술교육의 실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점, 결혼이민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 점,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동의 외국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재 및 교육비 지원 등 결혼이민자의 언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점, 다문화가족을 위한 일자리의 개발·알선하도록 한 점에서 재정소요가 수반될 것이 예상된다(안 제5조의2, 제6조의2, 제10조④, 제12조).

###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 3. 미첨부 사유

가. 안 제5조의2 및 제6조의2,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다문화 이해 교육’과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개발·보급’, ‘다문화가족을 위한 일자리의 개발·알선’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본 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안 제10조에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동의 외국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재 및 교육비 지원 등 결혼이민자의 언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현 입법단계에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 4. 작성자

조진래의원실 서일교비서관  
(02-788-2587, [ilgyo@assembly.go.kr](mailto:ilgyo@assembly.go.kr))